

#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8-328
----------	-------

제안년월일 : 2020. 3. 12.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원안 제안일자
  - 2020. 2. 20 현옥순 의원 등 12명 의원의 공동 발의
  - 2020. 2. 20 이경애 의원 등 13명 의원의 공동 발의
- 원안 회부일자 : 2020. 2. 21
- 원안 상정일자 : 2020. 3. 3.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 대안 제안경위 :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2건이  
동시 회부됨에 따라 병합심사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된 경로당 설치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간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을 통합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대안을 제안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경로당 지원계획 및 설치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

4.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현행조례안 : 붙임3
7.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4
8. 예산수반사항 : 붙임5 (비용추계서)

## [붙임1]

###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란 경로당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다음 각호에서 정한”을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제3호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고, “제3호에서 제5호”를 “제4호에서 제6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은 시설유지관리에 한정한다.)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

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정기적으로”를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붙임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대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로당 설치”란 경로당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li> <li>“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li> </ol>
<p><b>제4조(경로당 지원)</b> ①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p> <p>1.~2. (생략)  <b>&lt;신설&gt;</b></p> <p>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p> <p>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p> <p>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비품이나 물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4조(경로당 지원)</b> ① -----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p> <p>1.~2. (현행과 같음)</p> <p>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p> <p>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유지관리에 한정한다)</p> <p>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p> <p>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p> <p>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p>